#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77

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김성주·강선우·고영인

김회재 · 남인순 · 송영길

송옥주·정필모·최종유

허종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·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서비스대상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소득·재산 등 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업무담당자가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·재산 등 조사를 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기항목 등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,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·재산조사 시 신청자의 소득·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 고,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·판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·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제공대 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1조제2항) 법률 제 호

#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·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	제21조(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
시) ① (생 략)	시) 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
	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
	여부를 결정할 때에 제20조제2
	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·정보
	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
	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
	자의 소득・재산 수준이 보건복
	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
	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
	생략하고 급여의 지급 여부를
	결정할 수 있다.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